

의안번호	2204575
의 퇴 인	김태년의원
회 답 일	2024.11.11.
추계번호	24D414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 원회)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 2명을 포함하여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허가등의 신청인이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3조제7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2명 이하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함(제5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소관 관할부대의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의 신·증축, 도로·철도·교량 등의 설치 또는 변경 등을 심의하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명 증원¹⁾하고,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 2명이 포함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안에 따라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추가되는 지역주민 2명에 대해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1) 현행법은 관할부대심의위원회를 5인 이상 9인 이하(허가 등 신청인이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3조제7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2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한다)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1] 관할부대심의위원회 개최회수 및 안전수 현황

(단위: 회,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육군	심의위원회	713	714	691	727	672	3,517
	안전수	4,742	3,892	3,912	3,768	3,538	19,852
해군	심의위원회	77	96	104	90	85	452
	안전수	349	389	299	320	310	1,667
공군	심의위원회	408	462	437	452	431	2,190
	안전수	2,308	2,761	3,143	3,149	2,878	14,239
해병대	심의위원회	41	43	49	50	37	220
	안전수	1,225	1,125	1,262	1,155	947	5,714
합계	심의위원회	1,239	1,315	1,281	1,319	1,225	6,379
	안전수	8,624	8,167	8,616	8,392	7,673	41,472

자료: 국방부

-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관할부대의 보호구역 내에 민간기업이나 개인의 이해 관련 사항과 공공의 이해 관련 사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민간기업이나 개인의 이해 관련 사항으로는 건축물의 신·증축, 조립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등이 있음
 - 공공의 이해 관련 사항으로는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등이 있음
 - 군 관련 사항으로는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관할부대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 있음
-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안전 중 민간기업이나 개인의 이해 관련 사항의 경우 안전마다 이해당사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안전에 따라 참여해야하는 이해당사자가 다를 수 있고, 군 관련 보안사항에 대한 논의 시 민간위원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어, 연간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또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이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회의참석수당²⁾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Ⅲ.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

2)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만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만원 내로 편성하고,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